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 | |
|-----------|--|
| 사 건 | 2012나1956 손해배상(기) |
| 원고, 항소인 | ○○○ 충주시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유달준 |
| 피고, 피항소인 | ○○○ 인천 부평구 |
| 제 1 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3. 13. 선고 2011가소1472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2. 11. 27. |
| 판 결 선 고 | 2012. 12. 2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2.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오토바이 킷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로 개설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 302-****-****-**,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1. 6. 16. 13:08경 인터넷 메신저 사이트인 '네이트온'에 원고의 언니인 ●●● 명의의 아이디(ID)로 접속한 다음 원고에게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니 이 사건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14:09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76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송금액은 그 무렵 모두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4. 5.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호 및 2012하면****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 11개의 금융기관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피고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건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2) 피고가 2012. 4. 5.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보다 앞서 2011. 12. 30.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2012. 1. 5.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12. 3. 13. 열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변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사기범행인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 사건 계좌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7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그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계좌가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사기범행이 매우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실정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비록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오토바이 쿠키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가해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사기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

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메신저 대화내용만으로 경솔하게 이 사건 계좌에 5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380만 원(= 760만 원 × 50/100)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일인 2011.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김수정

판사 박정진